

2) 건축물의 벽, 기둥, 바닥, 보 또는 건축부재(이하 주요 건축부재라 한다)는 한국공업규격 표시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, 한국공업규격표시제품에 없는 경우에는 국립건설시험소장에 인정하는 것  
에야 한다.

## 2. 침구류의 방염 처리 유보 조치

가. 소방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 중 침구류에 대하여는 "85.12월까지 방염 처리를 하도록 동 부칙 제2항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나,

나. 방원의 경우, 방염 처리된 침구류를 사용하게 되면 원자는 피부염에 발생될 우려가 있다하므로,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방염 처리 기간을 1987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유보 조치함.

## 3. 옥외 소화전에 대한 기술 기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소방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25조와 111호 규정 중 옥외 소화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술상의 규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표준 옥외 소화전 ("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검정에 관한 규칙"이라 한다. 제357조 내지 제365조 및 제372조에서 규정된 옥외 소화전을 말한다.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) 이외의 옥외 소화전에 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검합부 및 내압력등) 표준 옥외 소화전 이외의 옥외 소화전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어 생산하게 되는 때에는 제조업자는 동 제품이 검정 규칙 제358조, 제361조 내지 제364조 및 제37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, 제7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조(검정 신청 등) ① 옥외 소화전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정 규칙 제1장 및 제2장을 적용하며, 형식 검정 신청서에 제출할 전품의 수량, 형식 변경의 승인, 범위, 정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, 개별 검정의 회계수권수량, 개별 검정의 합계 표시 및 검정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표준 옥외 소화전의 기준에 의한다.

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검정 규칙 제4조 제1항 각호의 규정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할 검사항목이 필요로 하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시행령 :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 
시행규칙 :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4. 안전점검 결과 통계 작성 지침 보완

① 안전 점검 결과 통계 작성 지침 : 협회협부의 전신화로 인해 안전 점검 결과 통계 작성 방법에 일부 보완되었다. 보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 1) 작성원칙

가. 월별, 용도별로 구분해서 작성한다.

나. 연면적 1000㎡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작성한다.